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06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정을호·이기헌·백승아

문금주 • 홍기원 • 안도걸

김한규 • 서삼석 • 박수현

조승래 · 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 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을 "위탁기업은 해당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으로 하고, "서면으로"를 "수탁기업과 서면으로"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위탁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	①
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	
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u>수탁기</u>	<u>위탁기</u>
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u>는 날까지</u>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비	
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u>서면</u>	<u>수탁</u>
<u>으로</u> 체결하여야 한다.	기업과 서면으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	2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u>아니한</u>	<u>아</u> 니
<u>자</u>	한 위탁기업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